

심 판 규 정

[제정 1999.03.27]

개정 1999.06.05.

개정 2002.01.01.

개정 2005.03.12.

개정 2008.07.10.

개정 2012.01.07.

개정 2013.01.26.

개정 2014.02.15.

개정 2015.02.14.

개정 2016.05.07.

개정 2017.01.14.

개정 2018.01.13.

개정 2018.03.25.

개정 2019.01.12.



사단법인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제4장 심판규정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민국의합기도총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와 산하회원 단체 및 소속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모든 대회를 통일된 심판규정으로 공정하고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2019.01.12)

【해설】

모든 합기도경기의 심판규정은 이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제2조 심판의 자격

1. 본 협회에서 실시한 심판연수과정을 수료하고 각 해당 급의 심판자격시험을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자격 조건

1) 본 협회가 인정하는 합기도 공인 4단 이상으로 지도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나이 제한은 현 20세 이상 65세 이내이며 신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개정2013.01.26.)

3) 신상의 결격사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한 장애등급 사정기준에 따라 장애가 없는 사람.

단, 대상자의 요청으로 경기위원회의 특별 심의를 통해 장애분류에 따라 자격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

4) 해당 급에 따른 신청자의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다.

1급 신청자 : 합기도 공인 6단 이상 8단 이내 2급 소지하고, 보수교육 2회를 이수한 사람.(연1회 실시)

2급 신청자 : 합기도 공인 5단 이상 3급 소지하고, 보수교육 2회를 이수한 사람.

3급 신청자 : 현20세 이상으로 합기도 공인4단 이상으로 지도관장의 추천

을 받은 사람.

3. 심판의 자격구분은 다음과 같다.

1급 : 해당 급의 연수교육수료, 자격시험 합격.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급 : 해당 급의 연수교육수료, 자격시험 합격.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급 : 해당 급의 연수교육수료, 자격시험 합격.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4. 자격의 유효기간은 자격증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5. 해당 자격을 유지하려면 당해 연도 보수교육 1회 이상 수료를 한 후, 대련 경기 1회 이상, 연무경기 1회 이상의 심판원으로 활동해야 한다.

제3조 심판의 구성 및 배정

1. 대련경기는 배심원의 감독 하에 주심 1명, 부심 3명이 주관하며, 주심과 부심은 기록원과 계시원의 보조를 받는다. (개정2016.5.07)

2. 대련경기 심판원 배정은 대진표 작성 후에 한다.

3. 연무경기, 호신술경기, 호신형경기는 5심제, 종합단체연무경기는 7심제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2016.5.07)

4. 기록경기는 3심제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2016.5.07)

5. 대련경기 심판원은 대전선수와 동일한 팀의 소속심판원은 배정될 수 없다. 단, 경우에 따라 심판이 부족한 경우 부심은 예외로 한다.

6. 심판은 본 협회의 당일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나 팀의 코치, 감독을 경할 수 없다.

7. 전국대회 심판원은 본 협회에서 발급한 2급 이상의 심판자격을 보유한 사람에 한하여 당해 협회의 전문(상임)심판원 서류전형 심사를 통과 한 후 당해 전문심판원 연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당해 전국대회 심판원 자격을 부여한다. 각 전국대회의 심판원 배정은 심판위원회에서 심판원 접수신청을 받아 배정한 후경기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최종 심판원 배정을 확정한다. (개정 2016.5.07)

제4조 심판위원장의 임무

1. 심판위원장은 모든 경기에 임하는 심판원을 지휘 감독한다.

2. 심판위원장은 주심 및 부심의 오판이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배심원이 주심 및 부심교체를 신청할 때 즉시 경기위원회와 협의 후 경기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판원을 교체한다.
3. 경기 중 주심 및 부심의 사고가 있을 때 다른 예비주심과 예비부심을 심판원으로 배정하여 경기를 계속하게 한다.

제5조 심판의 임무

1. 대련경기

- 1) 대련경기 심판은 배심원, 주심, 부심, 기록원, 계시원으로 구성한다.
- 2) 배심원은 전자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주심의 수신호 및 부심기에 따라 채점표에 기록하며 기록원에게 지시하여 득점, 감점을 채점판에 표시하도록 한다.
- 3) 배심원은 경기종료 후 주심에게 전광판 및 채점표의 집계에 따라 승·패를 확인시키고, 주심은 이에 따라 승·패 판정을 한다.
- 4) 배심원은 주심, 부심의 득, 감점 신호가 이상이 있거나 판정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주심과 부심을 호출하여 조정할 수 있다.
- 5) 배심원은 기록원과 계시원이 정확한 기록과 계시가 되도록 지시, 감독하여야 한다.
- 6) 주심 및 부심은 경기위원회 및 심판위원회, 소청위원회에서 득, 감점에 대한 이견을 물었을 때 사실대로 진술하여야 한다.
- 7) 선수가 주심으로부터 감점, 경고를 받으면 즉시 배심원은 전광판 및 채점표에 기록이 되도록 기록원에게 지시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 8) 배심원은 경기 종료 후 점수를 집계하여 결과를 경기위원회 기록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9) 채점표에 한번 기록하면 절대로 변경할 수 없으며 배심원의 승인이 있을 때 수정이 가능하다.
- 10) 주심과 부심은 대련경기규정 제3조 2항에 따라 위치해야 하며 부심은 경기 시작 후 양선수가 잘 보이는 곳으로 좌, 우로 이동하여야 한다.
- 11) 5회 경기 대전후 주, 부심 대기석에서 휴식을 취해야 하며 선수와 지도자

(감독, 코치)하고 언어소통을 할 수 없다.

2. 연무경기

- 1) 연무경기 심판은 배심원과 심판원으로 구분한다.
- 2) 배심원은 득점과 감정의 권한이 없으며 심판원들의 득점과 감점이 공정하게 판정되는지 감독한다.
- 3) 배심원은 계시원이 정확한 계시가 되도록 지시, 감독하여야 한다.
- 4) 배심원은 선수인원, 복장상태, 경기시간에 따른 감점을 총점에 포함시켜야 한다.
- 5) 경기종료 후 점수집계를 통하여 종목별 순위를 결정하여 경기위원회 전산운영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6) 심판원은 규정에 의하여 채점표에 점수를 기록하고 배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7) 심판원은 배심원과 심판위원장 및 소청위원회에서 득, 감점에 대한 이견을 물었을 때 사실대로 진술하여야 한다.
- 8) 채점표에 한번 기록하면 절대로 변경할 수 없으며 배심원의 승인이 있을 때 수정이 가능하다.
- 9) 심판원은 연무경기규정 제5조에 따라 위치해야 하며 경기 중 자리를 이탈할 수 없다.

제6조 심판의 복장

1. 심판의 복장은 경기위원회에서 지정한 공인(전문)심판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공인(전문)심판복장 및 물품 (개정2016.5.07)

- ① 상의: 협회에서 지정한 정복
- ② 하의: 검정색 양복바지
- ③ 협회 뱃지 착용
- ④ 전문심판원 자격증 패용
- ⑤ 흰색와이셔츠 착용(6월~9월/반팔, 6월~9월을 제외한 시기는 긴팔)
- ⑥ 적색넥타이착용
- ⑦ 흰색무도화 착용
- ⑧ 대련경기용 심판원카드 지참

- ⑨ 경기규정집 및 필기도구지참
- ⑩ 청, 홍 아대 착용
- ⑪ 청, 홍 깃발 지참

단, 공인된 심판복장외의 심판복장으로 대회경기의 심판원으로 참여할 경우 반드시 경기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대회에 참여하는 심판원복장은 전원이 동일해야 한다.

제7조 심판의 자격과 구분

1. 배심원은 본 협회 심판자격1급과 당해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2. 주심은 본 협회 심판자격1급과 당해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3. 부심은 본 협회 심판자격2급과 당해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4. 기록원은 본 협회 심판자격3급과 당해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5. 계시원은 본 협회 심판자격3급과 당해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 단, 대회규모 및 심판현황에 따라 심판위원회와 경기위원회에서 조정 할 수 있다. (개정2013.01.26)

제8조 배심원

1. 주심과 부심의 판정에 대한 공정성과 기록의 정확성을 관리 감독한다.
2. 주심과 부심의 득점, 감점, 경고 표시를 확인하고 채점표에 기록한다.
3. 채점표의 기록에 따라 총점에 의하여 승패를 결정하고 이를 주심에 알린다.
4. 배심원은 주심과 부심의 판정이 정확하지 못했거나 경기규정에 의거하여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주심과 부심을 소집하여 이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5. 배심원은 주, 부심의 판정을 확인하고 오심이 명확할 경우 즉시 심판위원장에게 주심과 부심의 교체를 건의할 수 있다.
6. 소청위원회의 심의에 대해 진술할 의무를 가진다.
7. 주심과 부심을 관리하며 연속 5회 이상 경기에 주심을 볼 수 없도록 한다.

제9조 주심

1. 주심은 대련경기의 모든 진행과 판정을 배심원의 감독아래 주관 집행한다.

2. 경기의 시작과 진행 및 종료의 제반사항을 선언한다.
3. 경기에 대한 감점, 경고의 권한을 갖는다. (개정2016.5.07)
4. 주심의 결정은 절대적이며 항의는 불허하고, 감독 및 코치의 이의제기는 소청 위원회의 소청절차로만 가능하다.
5. 주심은 소청의 절차를 무시하고 선수나 감독, 코치의 항의나 이의제기로 경기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배심원의 승인을 얻어 해당 선수를 “실격패”로 처리하고 상대선수에게 “실격승”을 선언할 수 있다.
6. 양 선수의 기술이 현저한 차이가 있어 심한 타격을 받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선수나 코치의 의견을 들어 본 후 주심의 판단으로 경기를 중지시키고 승패를 판정할 수 있다. (주심에 의한 기권승, RSC승)
7. 부상이나 기타의 이유로 경기 속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는 경기를 중지시키고 배심원의 결정에 따라 승자를 결정한다.
이 결정권은 주심에게 있으나 의무담당자와 상의했을 때에는 그 의견에 따른다. (주심에 의한 기권승, RSC승)
8. 복장이 파손되었을 경우 주심은 경기를 중지시킬 수 있다.
9. 주심은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거나 복장이 단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1분의 조정 시간을 주며 조정시간에도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 실격처리 한다.
10. 선수의 모든 위반을 수신호와 동시에 명령어로 하여야 한다.
11. 반칙이나 실격 등의 사유로 경기를 중지시켰을 때에는 그 이유와 어느 선수 인지를 배심원 또는 부심에게 알린다.
12. 선수가 서로 잡고 3초 이상 경과하면 “갈려”를 선언한다.
13. 확인할 수 없는 반칙행위는 부심과 상의할 수 있다.
14. 주심은 배심원의 승인을 득하여 규정에 따라 판정권을 독자적으로 행사 할 수 있다. (개정2016.5.07)

제10조 부 심

1. 득점 시 부심용 전자기기 및 부심기로 해당 득점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부심은 주심을 보조한다.
3. (삭제 2018.01.13)
4. 주심과 부심은 서로 상의할 수 있다.

5. 부심은 전광판 및 채점판의 기록상황이 정확히 기록 및 표기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개정2016.5.07)
6. 배심과 주심이 의견을 물었을 때 자기 소견을 진술한다. (개정2016.5.07), (개정2017.01.14)
7. 부심은 검사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선수가 출전하기전의 대기석에서 복장검사를 한다.

제11조 기록원

1. 기록원은 배심원의 지시에 따라 대련경기에서의 득점 및 반칙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전광판 및 채점판으로 표시한다.

제12조 계시원

1. 계시원은 경기시작 시간부터 경기 종료시간까지 주심의 신호에 따라 경기시간을 계시한다.
2. 주심의 “갈려”, “중지” 선언 시에는 경기 중지 상태로 전환하여 경기시간을 고의로 소모시키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단, 대회경기 일정으로 경기위원회의 승인으로 “갈려” 동작시 경기시간을 멈추지 않고, 경기를 진행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기 전 방송 등을 통한 사전공지를 해야 한다. (개정 2016.05.07)
3. 계시원은 주심이 카운트할 수 없을 경우 계속 계수를 한다.
4. 계시원은 경기종료 시에 주심에게 종료 신호를 해야 한다.

제13조 판정의 책임

1. 심판의 판정은 절대적인 것이나 추후 이의제기가 있을 때 소청위원회의 판결에 의해 오판에 대한 책임을 지며, 승부조작 및 고의적인 심판판정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는다.
(개정 2016.5.07.), (개정 2017.01.14)

제14조 위험한 상태 및 조치

1. 위험한 상태

- 1) 정당한 공격으로 신체의 일부분이 바닥에 닿은 상태로 공격 또는 방어능력

이 상실된 때

- 2) 강한 타격 또는 관절의 이상으로 경기를 계속할 능력이 없을 때
- 3) 공격이나 방어의 의사 없이 비틀거리고 있을 때.
- 4) 의식을 잃어 경기를 속행 할 수 없는 상태.

2. 위험한 상태에 대한 조치

- 1) 유효부위에 정당한 가격으로 인하여 위험한 상태를 보일 때 주심은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 ① “갈려” 선언 후 공격선수를 먼 거리에 위치토록 한다.
 - ② 주심은 위험한 상태에 처한 선수에게 큰소리로 “하나”에서 “열”까지를 1초 간격으로 세며 이를 수신호로 알린다.
 - ③ 주심은 계수 하는 도중에 선수가 일어나 재 대전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여덟”을 셀 때까지 선수를 쉬게 하며 선수의 회복을 확인한 후 경기를 계속한다.
 - ④ 주심이 “열”을 셀 때까지 위험에 처한 선수가 재 대전의 의사를 취하지 못하면 이를 패자(KO)로 한다.
 - ⑤ 주심은 선수가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계수 없이 또는 계수도 중이라도 승·패를 결정할 수 있다.
 - ⑥ 주심이 계수 하는 도중 시간이 종료되어도 계수는 계속된다.
 - ⑦ 양 선수가 동시에 위험한 상태에 처해 “열”을 셀 때까지 회복되지 않았을 경우 위험한 상태에 처하기까지의 점수로 승·패를 결정한다.
 - ⑧ (삭제 2018.01.13)
 - ⑨ 감점에 해당하는 반칙으로 상대에게 상해를 입혀 경기진행이 어려울 경우 공격선수에게 “반칙패” 공격을 당한 선수에게는 “반칙승”을 선언한다.
 - ⑩ 경기도중 점수를 앞서고 있다하더라도 부상 등의 사유로 계속 경기를 속행할 수 없어 경기를 고의적으로 지연 시킬 경우 해당 선수를 실격처리 할 수 있다. (개정2016.5.07.)

제15조 부상으로 인한 경기중단 및 상황처리 (개정2017.01.14)

부상으로 인하여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주심은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 1) 경기를 중단시킨 후 배심원석 및 계시석에 경기시간 중지를 선언한다.
- 2) 부상 선수는 경기장내에서 1분 이내의 범위에서 치료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수는 경기장내에서 치료를 해야 하며, 치료 시 스프레이파스 분사 등 경기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는 금한다. (개정2017.01.14)
- 3) 경상임에도 불구하고 재 대전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패자로 한다.
- 4) 금지행위에 의해 경기를 진행할 수 없게 된 때는 금지행위를 한 사람을 패자로 한다.
- 5) 사고로 인해 경기속행이 불가능할 때는 그때까지의 점수로 승·패를 결정한다.

제16조 경기진행

1. 선수 호출

- 1) 경기시간 30분전에 안내 방송을 하며 경기 3분전부터 1분 간격으로 2회 호출한다.
- 2) 경기개시 시간까지 출전하지 않는 선수는 대전포기로 간주한다.

2. 신체 및 복장점검

- 1) 호출된 선수는 진행원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검사대에서 검사원으로부터 선수의 건강상태를 비롯한 신체 및 보호 장비의 검사를 받는다.
- 2) 검사대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기 전에 부심이 대신한다.
- 3) 복장 및 보호 장비가 본 회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출전을 하지 못하고 실격 처리된다.

3. 선수대기

- 1) 검사를 마친 선수는 배심원의 호출에 따라 선수등록증과 대진표를 확인한 후 지정된 위치에서 대기한다.

4. 선수입장

- 1) 검사를 마친 선수는 경기장으로 입장한다.
- 2) 선수대기석에서 대기하다가 주심의 “출전” 명령어와 수신호가 있으면 선수는 경기장 중앙을 향해 입례하고 자신의 위치로 입장한다.

5. 경기 시작과 종료

- 1) 주심의 선언에 의해 경기가 시작 및 종료된다.
- 2) 주심의 경기시간 운영을 계시원이 보조한다.

6. 경기진행 절차

- 1) 호출 된 선수는 선수대기석에서 대기한다.
- 2) 부심은 검사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장외선 밖에서 선수의 복장상태 및 보호 장비의 착용 그리고 선수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 3) 주심의 “청(주심의 오른손), 홍(주심의 왼손) 출전” 구호에 선수는 경기장 안으로 입장하기 전에 장외선에서 경기장중앙을 보고 입례한 후 선수위치로 가서 배심원석을 보고 선다.
- 4) 주심은 “앞에 보고”, “차렷”, “경례”, “바로” 구령에 따라 배심원석을 향하여 예의를 갖추게 한 후, “마주보고”, “차렷”, “경례”, “바로” 선수간의 예의를 갖추게 한다.
입례는 차렷 자세로 서서 45도로 허리와 머리를 숙여 입례를 한다.
- 5) 주심의 “맞대기” 라는 구령과 함께 선수는 오른발을 나오게 한 상태에서 오른손목을 맞대는 맞대기 자세를 취한다.
- 6) 주심의 “준비” 라는 구령과 함께 선수는 오른발이 뒤로 빠지며 기합과 함께 준비 자세를 취한다.
- 7) 주심의 “시작” 이란 구령으로 경기는 시작이 된다.
- 8) 경기가 끝나면 주심은 “마주보고”, “차렷”, “경례”, “바로” “앞에 보고”, “차렷”, “경례”, “바로” 예의를 갖추게 하고 선수를 배심원석을 보게 한 후 판정을 기다리게 한다. 단, 동점인 경우에는 승자판정을 위해 선수를 배심원석을 향해 정좌하게 한다. (개정2013.01.26)
- 9) 승자 선언은 주심이 승자 쪽을 향해 손을 들어 선언한다.
- 10) 주심은 승자선언 후 서로 악수를 하게하고 선수는 경기장 밖으로 퇴장하기 전에 장외선 안에서 경기장 중앙을 향해 입례한 후 퇴장한다.

제17조 전자기기 사용시 적용기준 (개정2014.02.15)

판정의 공정함을 기하기 위하여 전자기기(전광판, 부심용채점기등) 사용 시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심판원의 구성은 배심1명, 주심1명, 부심3명, 기록1명, 계시원1명을 원칙으

로 하며, 대회경기규모에 의하여 경기위원회에서 조정 할 수 있다.

- 2) 배심은 주심과 부심의 판정에 대한 공정성과 기록의 정확성을 관리 감독한다.
- 3) 주심은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하여 득점권한이 없으며, 감점, 경고등의 권한을 갖는다.
- 4) 득점은 부심3명중 2명 이상이 같은 득점을 표시한 것을 유효득점으로 채점한다.
- 5) 부심의 위치는 배심을 바라보고 시계방향으로 1부심, 2부심, 3부심이 위치한다. (개정2016.5.07)
- 6) 전자기기의 오류 발생 시 깃발 등의 수신호로 전환할 수 있으며, 명확히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 7) 전자기기의 경기종료시간의 동시 득점은 부심용 전자기기를 활용하여 전광판에 표기 된 점수 만 인정한다. 전자장비 사용에서 경기시간 종료시간 동시 득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2016.5.07)

제18조 주심의 명령어 및 수신호

경기진행 순서에 따른 명령어 및 수신호는 다음과 같다.(개정2013.01.26.),
(개정2018.01.13),(개정2019.01.12)

명령어	주심의 수신호
①청, 홍 출전	▶손끝을 모아 어깨선에서 45도 대각방향으로 손등을 위로 향하여 경기장안의 청, 홍 선수 위치를 가리키며(청부터 시작) ""출전".이라는 명령어를 구호한다. ▶청,홍 선수는 주심의 명령어를 듣고 선수위치에 선다.
②앞에 보고	▶양팔을 수직으로 세우고 90도로 팔꿈치를 접어 양손을 위로 뻗는다. ▶이때 양손바닥은 정면을 향하게 한다.
③차렷	▶앞에 보고의 수신호 동작
④경례	▶정면을 향해 수평으로 뻗는다.
⑤바로	▶앞에 보고 수신호 동작
⑥마주보고	▶앞에 보고 수신호에서 손바닥이 안쪽으로 서로 마주보게 한다.
⑦차렷	▶마주보고 수신호 동작
⑧경례	▶안쪽으로 수평으로 숙인다.
⑨바로	▶마주보고 수신호 동작
⑩맞대기	▶오른발을 내밀어 우자세에서 양손으로 양선수의 손목을 잡고 손목을 손등이 마주보게하여 맞대게 한다.
⑪준비	▶오른손으로 양선수의 맞 된 손등의 가운데에 올려놓은 손날이 아래로 향하게하여 오른팔의 손끝이 정면으로 향하고 수평으로 곧게 편다.
⑫시작	▶핀 오른팔을 손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90도로 올리며 양발이 수평이 되도록 오른발이 물러난다.
⑬갈려	▶갈려, 중지, 그만의 동작은 동일하며, 우자세로 오른발이 양 선수사이로 들어가면서 오른 손끝을 모아 손날이 아래로 향하게 어깨선에서 팔이 수평이 되도록 뻗는다.
⑭중지	▶갈려 동작과 동일 함.
⑮계속	▶양선수의 중앙을 가른 핀 오른팔을 손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90도로 올리며 양발이 수평이 되도록 오른발이 물러난다.
⑯공격	▶양 주먹을 쥐고 가슴선 아래에서 어깨 넓이로 좌, 우로 벌려 정권이 마주보며 모으는 동작을 1회 한다.
⑰그만	▶갈려 동작과 동일 함.
⑱승패 (청, 홍승)	▶선수, 주심 정위치 상태에서 승자 쪽으로 손끝을 어깨높이에서 45도 방향으로 손끝을 모아 손바닥이 위로 하게하여 팔을 펼친다.

⑲선수악수	▶오른 손바닥이 왼손 등을 감싸면서 오른손 아귀와 왼손 아귀를 맞잡는다.
⑳선수퇴장	▶양 손끝을 모아 어깨 높이까지 양 팔굽을 굽혀 올린다음 양 손바닥이 양선수를 향하게 수평으로 뻗는다.
❶1점	▶전자기기인 부심기를 이용하여 1점버튼을 누른다. 전자기기 미사용시 득점한 선수 쪽을 어깨높이에서 수평으로 옆으로 뻗으며 검지를 뻗는다.
❷2점	▶전자기기인 부심기를 이용하여 2점버튼을 누른다. 전자기기 미사용시 득점한 선수 쪽을 수직으로 머리위로 올리며 검지와 중지를 뻗는다.
❸퇴장	▶중지 명령어를 하고 선수를 정위치로 가게 한 후 ▶주심의 정위치에서 해당선수의 눈을 주시하며 양발을 모아 동시에 해당선수를 바라보면서 움직인 다음 뒷발을 앞으로 움직여 양발을 모은 다음 오른 손끝을 모아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한 다음 왼 어깨에서 수평으로 해당선수를 청.홍으로 구분하여 가리키면서 퇴장이란 명령어를 한 후 오른손으로 빨간색카드를 심판복 안쪽에서 꺼내어 해당선수의 눈높이에 맞추어 표시 한다.
❹감점	▶중지 명령어를 하고 선수를 정위치로 가게 한 후 ▶주심의 정위치에서 해당선수의 눈을 주시하며 양발을 모아 동시에 해당선수를 바라보면서 움직인 다음 뒷발을 앞으로 움직여 양발을 모은 다음 오른 손끝을 모아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한 다음 왼 어깨에서 수평으로 해당선수를 청.홍으로 구분하여 가리키면서 감점이란 명령어를 한 후 오른손으로 주황색카드를 심판복 안쪽에서 꺼내어 해당선수의 눈높이에 맞추어 표시 한다.
❺경고	▶중지 명령어를 하고 선수를 정위치로 가게 한 후 ▶주심의 정위치에서 해당선수의 눈을 주시하며 양발을 모아 동시에 해당선수를 바라보면서 움직인 다음 뒷발을 앞으로 움직여 양발을 모은 다음 오른 손끝을 모아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한 다음 왼 어깨에서 수평으로 해당선수를 청.홍으로 구분하여 가리키면서 경고란 명령어를 한 후 오른손으로 노란색카드를 심판복 안쪽에서 꺼내어 해당선수의 눈높이에 맞추어 표시 한다.
❻득점무효	▶깃발 사용할 경우에만 부심은 득점 오른손을 머리위로 들어 올려 좌우로 흔든다.
❼카운트 계수법	▶선수의 눈을 바라보고, 선수의 상태를 파악하며, 오른 주먹을 쥔 후 오른손 엄지부터 차례로 하나씩 펴서 다섯까지 계수를 한 후 오른손바닥이 선수를 향하게 편 후 왼주먹을 쥔 다음 왼손바닥이 선수를 향하면서 왼손 엄지를 펴서 여섯을 계수하여 차례로 열까지 계수를 한다. 단, 선수가 대전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반드시 여덟까지 계수를 해야 한다.

[표-1] 주심의 명령어 및 수신호

부 칙 (1999.03.2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6.05)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1.0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3.102)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7.1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01.0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1.26)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02.15)

(시행일) 이 규정은 본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02.14)

(시행일) 이 규정은 본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05.07)

(시행일) 이 규정은 본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01.13)

(시행일) 이 규정은 본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03.25)

(시행일) 이 규정은 본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1.12)

(시행일) 이 규정은 본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운영지도자규정

[제정 1999.03.27]

개정 1999.06.05.

개정 2002.01.01.

개정 2005.03.12.

개정 2008.07.10.

개정 2012.01.07.

개정 2013.01.26.

개정 2014.02.15.

개정 2015.02.14.

개정 2016.05.07.

개정 2017.01.14.

개정 2018.01.13.

개정 2018.03.25.

개정 2019.01.12.

개정 2020.01.11.



사단법인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제1장 경기운영지도자규정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민국의합기도총협회(이하 “협회” 라고 한다.)와 산하회원 단체 및 소속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모든 대회를 통일된 **경기운영지도자(경기지도자)**규정으로 공정하고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2019.01.12), (**개정2020.01.11.**)

【해설】

합기도 경기운영지도자(경기지도자)규정은 이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제2조 **경기운영지도자(경기지도자)의 자격** (**개정2020.01.11.**)

1. 본 협회에서 실시한 해당 급의 **경기운영지도자(경기지도자)**연수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급의 **경기운영지도자(경기지도자)** 자격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개정2020.01.11.**)
2. 1급, 2급, 3급 **경기운영지도자(경기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개정2020.01.11.**)
3. **경기운영지도자(경기지도자)**는 본 협회의 당일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나 팀의 코치, 감독으로 활동 할 수 있다. (**개정2020.01.11.**)
4. 자격의 조건
 - 1) 본 협회 합기도 공인4단 이상으로 지도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2) 나이 제한은 **만**20세 이상 65세 이내이며 신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개정2013.01.26**), (**개정2020.01.11.**)
 - 3) 해당 급에 따른 신청자의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다.
 - (1)1급 신청자 : **본 협회** 합기도 공인 6단 이상 8단 이내 2급 소지자로 보수교육 2회를 이수한 사람(연1회 실시) (**개정2020.01.11.**)
 - (2)2급 신청자 : 합기도 공인5단 이상 3급을 소지하고, 보수교육 2회를 이수한 사람. (**개정2020.01.11.**)
 - (3)3급 신청자 : **만**20세 이상으로 본 협회 합기도 공인4단 이상으로 지도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2020.01.11.**)
5. **경기운영지도자(경기지도자)**의 자격구분은 다음과 같다. (**개정2020.01.11.**)

- 1) 1급 : 1급 교육수료 후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 2) 2급 : 2급 교육수료 후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 3) 3급 : 3급 교육수료 후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6. 자격의 유효기간은 자격증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7. 해당 자격을 유지하려면 당해 연도 보수교육 1회 이상 수료, 대련경기 1회 이상, 연무경기 1회 이상 참가해야 한다.

제3조 경기운영지도자(경기지도자)의 구분 (개정2020.01.11.)

1. 임 원
 - 1) 경기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각 분과별의 임원
 - 2) 경기운영지도자(경기지도자) 2급 이상을 소지한 사람 (개정2020.01.11.)
2. 감 독
 - 1) 지역별 협회 소속도장의 관장
 - 2) 경기운영지도자(경기지도자) 2급 이상을 소지한 사람 (개정2020.01.11.)
3. 코 치
 - 1) 지역별 협회 소속도장의 관장의 추천을 받은 지도사범
 - 2) 경기운영지도자(경기지도자) 3급을 소지한 사람 (개정2020.01.11.)
4. 기록원
 - 1) 경기운영지도자(경기지도자) 3급 소지한 사람이거나 해당업무에 필요한 이론과목 및 실기를 일정기간의 교육을 수료한 사람 (개정2020.01.11.)
5. 계시원
 - 1) 경기운영지도자(경기지도자) 3급 소지한 사람이거나 해당업무에 필요한 이론과목 및 실기를 일정기간의 교육을 수료한 사람 (개정2020.01.11.)
6. 진행원
 - 1) 경기운영지도자(경기지도자) 3급 소지한 사람이거나 해당업무에 필요한 이론과목 및 실기를 일정기간의 교육을 수료한 사람 (개정2020.01.11.)

제4조 경기운영지도자(경기지도자)의 의무 (개정2020.01.11.)

1. 정기적인 자격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에 임해야 한다.
2. 경기규정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3. 경기규정에 의한 기술에 대한 지도법을 연구 개발한다.
4. 정기적인 경기기술 강습회에 참여한다.

부 칙 (1999.3.2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6.05.)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1.0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3.1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7.1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01.0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1.26.)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02.15.)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02.14.)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05.0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01.13.)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03.25.)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1.12.)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1.1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심판위원회 규정

제정 2016.05.07. 제2차 이사회

개정 2018.03.25. 제1차 이사회

전부개정 2019.01.12. 제1차 이사회

제1장 총 칙

제 1 조(설치근거 및 명칭)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민국의합기도총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37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위원회는 심판이 스포츠의 기본 정신과 책임감을 갖고 경기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 심판으로서의 역할, 임무,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경기진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 3 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협회에서 자격을 취득한 등록 심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② 협회는 이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과 시행세칙을 협회의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이 규정과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심판위원회 규정이 상이할 경우 체육회 심판위원회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 4 조(기능)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① 심판이 경기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② 심판의 권익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
③ 심판양성 교육(심판 아카데미)에 관한 사항
④ 심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⑤ 심판 평가에 관한 사항
- ⑥ 기타 위원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 등

제 2 장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제 5 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위원장 1명
- 2. 부위원장 3명 이하
- 3. 각 위원 7명 이상 15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여성 1명 이상을 포함한다.
매년도 상임심판원은 그 규모에 따라 별도로 위촉한다.

②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정관 제26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2. 동일 대학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 3. 경기인(지도자, 선수 및 심판) 출신자가 재적위원수의 5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4. 지도자로 재직 중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회장이 협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하에 소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6 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사무처장과 협의를 거쳐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정관 제26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2. 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 7 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 8 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협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단, 매년 고과 평가하여 제5조, 6조에 따라 재신임 절차를 거치며 고과평가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9 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회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10조(회의소집) 회장 또는 사무처장,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1조(의결정족수)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인이 제1항과 같은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피할 수 있다.

제 3 장 심판 등록 및 관리

제14조(심판등록 구분) 협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심판등급을 구분한다.

1. 국제심판
 - 가. 1급
 - 나. 2급
 - 다. 3급
2. 상임심판
3. 전문심판
4. 국내심판
 - 가. 1급
 - 나. 2급
 - 다. 3급
 - 라. 기타

제15조(심판등록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심판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등에 의하여 제명된 사람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4. ‘협회 정관’ 제26조제1항 제4호부터 제12호까지 규정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② 등록절차를 마친 심판이 등록 이후 자격정지나 제명 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을 즉시 취소한다.

제16조(심판등록 및 활동) ① 심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심판자격을 취득한 후 협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심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 및 협회의 심판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한 사람만이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심판은 협회의 심의를 거쳐 심판등록 변경 절차에 따라 심판등

록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기타 심판등록에 관한 사항) ① 협회는 등록심판의 기본정보, 선수·지도자경력, 심판경력, 교육이수경력, 상벌사항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과 협회 규정에 따라 협회 홈페이지 및 체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 또는 자료를 요청한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심판 활동 실적발급은 별도 지침에 따른다.

제 4 장 심판교육

제18조(교육실시) ① 협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심판에 대한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내용은 집합교육, 보수교육, 강습회, 심판활동과 도덕, 공정한 경기운영과 판정, 심판의 책임감 등 교양 강좌와 규약, 경기규칙, 판정의 이론, 실기 교육 등 해당 단체별 실정에 맞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 5 장 심판평가 및 배정

제19조(심판평가) ① 협회는 심판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상임심판, 종목단체에 등록하여 해당 연도 경기진행에 참가한 심판에 대하여 등급별로 판정 평가서를 작성하여 협회 심판위원회를 통해 심판고과를 관리하고 승급이나 배정 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종목단체별 실정에 맞게 지표 등을 별도의 세칙을 정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제20조(심판기피 및 제척) ① 협회는 대회전에 배정된 심판을 공개하고 선수, 지도자 등이 심판 기피를 합리적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요청할 경우, 해당 단체 심판위원회에

서 그 사유를 심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경기에 관한 심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 지도자의 친인척은 해당 경기에 심판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동일 대학 출신은 가급적 배제한다.

제21조(심판배정) ① 협회는 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모든 대회 심판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심판 배정 시 같은 선수(팀) 경기를 연속으로 배정해서는 안 된다.

③ 협회는 체육회가 승인한 상임, 전문심판 및 체육회가 주관하는 심판양성교육(심판아카데미)과정을 이수한 심판을 우선 배정한다.

제22조(심판판정) ① 심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1. 외부 단체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심판 관련 규정과 해당 단체의 규약 및 심판 규정을 준수하고 경기규칙에 따라 명확한 판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경기 운영 및 판정에 있어 공명정대하게 양심에 따라 판정한다.

② 심판은 경기 진행 중 경기규칙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는다.

③ 심판은 경기종료 후 공식 경기기록 등을 기록원과 확인하며, 정해진 양식에 따라 경기보고서를 작성하여 심판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국내종합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시 비디오 재 판독과 최소 3년 이상 영상보관의 의무를 대회요강에 명시하여야 한다.(단,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⑤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와 소청은 해당 규정에 따라 소청위원회(경기위원장, 심판위원장, 경기부위원장, 심판부장, 기록부장, 질서부장, 영상판독위원장, 경기부장-당연직 간사)에서 처리한다.

제23조(심판의 품위) ① 심판은 협회에서 발급한 신분증서를 패용하여야 한다.

② 심판은 협회에서 규정한 복장과 장비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심판은 반드시 필요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④ 심판은 협회의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⑤ 심판은 오심과 편파판정에 대하여 위원회 규정 또는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징계(문책) 받을 수 있다.
- ⑥ 심판은 선수·지도자의 팀(단체 등) 입단, 계약 또는 기타 취직의 알선, 협조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제 6 장 상벌 및 심판 매뉴얼

제24조(심판의 상벌) ① 심판이 명백한 오심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심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언행을 할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 오심 누적 시 심판자격을 강등할 수 있으며, 오심 횟수에 따라 심판자격도 박탈할 수 있다.

제25조(심판의 포상) ① 심판 평가 및 교육 우수심판에 대해서는 체육회 등에 표창을 상신하며 심판 승급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우수 심판에 대해 체육회에 국제기구 연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심판매뉴얼 및 규칙) 협회는 심판매뉴얼 및 심판원제도 및 운영에 관하여 별도로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부 칙(2016. 5. 07)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임기에 대한 예외) 이 규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정관 부칙 제2조에 따라 새로 선출되는 회장은 임기 시작 직후 심판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수 있다.

부 칙(2018.03. 25)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1.12.)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날로부터 시행한다.

심판원 제도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2016.05.07. 제2차 이사회

개정 2018.03.25. 제1차 이사회

전부개정 2019.01.12. 제1차 이사회

개정 2020.01.11. 제1차 이사회

제 1 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사단법인 대한민국의합기도총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한 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규정 제26조에 의거하여 “심판원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칙은 협회의 심판원 자질을 향상시키고, 합기도 대회경기를 공정하고 더욱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한 심판원의 역할, 임무,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자격인정)

심판원은 협회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등록한 사람을 심판원으로 인정한다.

제4조(심판원의 규정)

① 국제심판원 : 협회에서 선발

가. 1급 국제심판원

나. 2급 국제심판원

다. 3급 국제심판원

② 국내심판원 : 협회에서 선발

가. 상임심판원

나. 전문심판원

다. 1급 심판원

라. 2급 심판원

마. 3급 심판원

제5조(심판원의 업무 구분)

① 국제심판원은 다음 대회의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다.

가. 협회 및 국제기구가 주최·주관하는 국제대회

나.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전국대회

다. 협회에서 승인 또는 위임한 각 시도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

라. 협회에서 승인 또는 위임한 각 시·군·구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

② 상임심판원은 다음 대회의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다.

가.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전국대회

나. 협회에서 승인 또는 위임한 각 시도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

다. 협회에서 승인 또는 위임한 각 시·군·구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

③ 전문심판원은 다음 대회의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다.

가.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전국대회

나. 협회에서 승인 또는 위임한 각 시도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

다. 협회에서 승인 또는 위임한 각 시·군·구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

④ 1급 심판원은 다음 대회의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다.

가.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전국대회

나. 협회에서 승인 또는 위임한 각 시도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

다. 협회에서 승인 또는 위임한 각 시·군·구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

⑤ 2급 심판원은 다음 대회의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다.

가. 협회에서 승인 또는 위임한 각 시도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

나. 협회에서 승인 또는 위임한 각 시·군·구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

⑥ 3급 심판원은 다음의 대회의 심판을 할 수가 있다.

가. 협회에서 승인 또는 위임한 각 사·도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

나. 협회에서 승인 또는 위임한 각 사·군·구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

제 2 장 심판원의 시험

제6조(수험자격) ① 국제심판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국제심판원 1급: 국제심판원 2급 자격을 갖고, 국제심판원 보수교육 2회를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나. 국제심판원 2급: 국제심판원 3급 자격을 갖고, 국제심판원 보수교육 2회를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다. 국제심판원 3급:

1. 국내심판원 1급 자격을 갖고, 전문심판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2. 국내심판원 1급 자격을 갖고 국내심판원 보수교육 3회 이상을 수료한 사람
3. 국내심판원 1급 자격을 갖고 해외지부의 활성화를 위한 협회장이 추천한 외국인

② 상임심판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국내심판원 1급 자격을 갖고, 전문심판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 협회에서 선발 한 사람.

나. 상임심판원은 국제심판원 응시자격을 갖으며, 자격검정에서 우대 받을 수 있다.

③ 전문심판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국내심판원 1급이나 2급 자격을 갖고, 소정의 전문심판원 자격검정을 통과한 사람.

나. 국내심판원 1급 자격을 갖고 전문심판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은 국제심판원 3급 응시 자격을 갖는다.

④ 국내심판원 1급: 국내심판원 2급 심판원 자격을 갖고,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가. 5년 이상의 심판 실무의 경험을 갖고 2급 보수교육 2회 이상을 이수하고 시·도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나. 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전국대회(심판연수 포함)에 3회 이상 심판원으로 참여하고, 시·도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다. 시·도 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시·도 대회에 5회 이상 심판원으로 참여하고, 시·도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라. **본 협회** 합기도 공인 6단 이상의 자격보유한 사람. (개정 2020.01.11.)

마. 1급 심판원은 만32세 이상이어야 한다.

⑤ 국내심판원 2급: 국내심판원 3급 심판원 자격을 갖고,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가. 3년 이상의 심판 실무의 경험을 갖고 3급 보수교육 2회 이상 이수하고 협회에서 인정한 사람.

나. 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전국대회(심판연수 포함)에 2회 이상 심판원으로 참여하고, 시·도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다. 시·도 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 3회 이상의 심판경력을 가지고, 시·도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라. **본 협회** 합기도 공인 5단 이상의 자격보유한 사람. (개정 2020.01.11.)

마. 현28세 이상인 사람.

⑥ 국내심판원 3급: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가. 협회 산하 시·도 및 시·군·구 회원으로 등록된 지 6개월 이상 경과한 사람.

나. 현20세 이상인 사람.

다. **본 협회** 합기도 공인4단 이상의 자격보유한 사람. (개정 2020.01.11.)

라. 기타 협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제7조(시험신청)

① 제6조에 의거하여 시험을 치르고자 하는 사람은 따로 정한 심판원 자격시험 및 수형신청서에 수형수수료를 첨부하여 소속단체의 추천을 받아 협회에 신청한다.

② 심판원의 시험신청은 해당 시·도협회를 거쳐 신청한다.

- ③ 국제심판, 상임심판, 전문심판원 신청서는 협회에 직접 제출한다.

제8조(자격시험)

심판원 시험은 각 급수별로 학과 및 실기로 구분하여 따로 규정에 의거한 심판원 자격검정시험을 시행한다.

제 3 장 심판원 등록

제9조(심판원의 등록신청)

① 제8조에 정한 시험에 합격하여, 등록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사진(3cm×3cm) 2매와 등록수수료를 첨부, 가입단체인 해당 시·도협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성명

나. 주민등록번호(뒷번호 1자리까지만 표기)

다. 주소(우편번호)

라. 전화번호

마. 심판원 자격시험의 합격증서의 번호

② 심판원의 등록신청은 시·도협회 사무국을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등록신청은 심판원의 시험에 합격한 후,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 협회는 제9조의 신청이 있을 때 제9조 1항의 사항을 기재하여 등록을 한다.

제11조(심판원증의 교부) 협회는 제10조의 등록을 하였을 때는 심판원증을 해당 신청자에 교부한다.

제12조(변경의 신고) 심판원은 심판원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이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수수료를 첨부하여 가입단체를 거쳐 협회에 그 요지를 신고한 후 심판원증을 제출하여 정정을 받는다.

제13조(심판원증의 재교부) ①등록자가 심판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은 신청서에 사유를 기재 후 재교부 수수료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등록의 취소 및 자격말소)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겼을 경우 협회는 해당심판원의 등록을 취소 및 자격말소를 한다.

가. 제18조를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나.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단, 회원자격을 취득 하였을 때는 심판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사망한 경우

라. 등록된 후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될 시에는 그 자격을 취소한다.

마. 제6조 수험자격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15조(심판원의 징계) 심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의 스포츠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자격을 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가. 심판원증을 타인에게 양도 하였을 때

나. 제19조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다. 기타 심판원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을 때

제 4 장 심판원 복장

제16조(심판원 복장) 심판원은 협회에서 인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대회에 심판원으로 참가해야 한다.

제17조(심판원용품) ①심판원은 협회에서 지정한 심판복, 명찰, 뱃지, 흰색무도화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대회에 참가한 심판원 외에는 심판원복을 경기장에서 착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심판원은 대회에 심판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다음의 물품(협회지정품)을 휴대하여야 한다.

가. 경기규정집

나. 대련경기용 카드

다. 필기도구

라. 스톱워치

마. 심판용 청·홍깃발

바. 심판용 청·홍손목아대

사. 기타

제18조(복장착용) 심판원은 다음과 같이 기간 별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① 일반복장(하절기 외)

가. 심판원 규정 지정복장 상, 하의 착용

나. 적색넥타이

다. 흰색무도화

라. 긴팔와이셔츠

마. 뱃지

바. 명찰

사. 기타 규정 용품

② 하절기복장(7~9월)

가. 심판원 규정 지정복장 상, 하의 착용

나. 적색넥타이

다. 흰색무도화

라. 반팔와이셔츠

마. 뱃지

바. 명찰

사. 기타 규정 용품

제 5 장 심판원의 의무

제19조(심판원의 의무) ① 심판원은 협회가 따로 정한 강습 또는 연수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② 심판원은 자신의 심판기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경기대회의 심판위원 또는 경기위원으로 추천 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③ 심판원은 경기대회심판원으로 배정 되었을 경우 심판원증을 패용해야 한다.

④ 심판원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0조(규칙의 제·개정) 이 규칙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개정한다.

제21조(수수료 및 등록료) 수수료 및 등록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연수교육등록 및 자격검정수수료

가. 1급 심판원 150,000원

나. 2급 심판원 120,000원

다. 3급 심판원 100,000원

② 보수교육등록비

가. 1급 심판원 70,000원

나. 2급 심판원 70,000원

다. 3급 심판원 70,000원

③ 심판원자격증 재교부 수수료 20,000원

제 6 장 상임심판원

제22조(상임심판원 운영목적) 역량 있는 상임심판원의 양성을 통하여 협회의 공정한 대회운영과 산하회원단체의 공정한 대회운영의 지도·감독 및 심판원 역량강화에 목적이 있다.

제23조(상임심판원 임면) ① 협회는 1급 이상의 심판원 자격을 보유하고, 5년 이상의 전문심판원 경력자 중에서 공정한 심판의 품위와 인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한하여 소정의 자격검정을 통하여 협회에서 임면한다.

② 제1항의 상임심판원 응시자격검정은 협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4조(상임심판원의 의무) ① 협회의 상임심판원으로 임명된 사람은 해당연도의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전국대회에 3회 이상 참여해야한다. 3회 이상 참여를 위반할 경우 차기연도 상임심판원 선발에서 제외된다.

② 상임심판원은 본 협회가 승인하지 않은 각종 대회의 심판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③ 협회에서 공정한 대회운영과 판정을 위하여 주최·주관하는 해당연도 상임심판원연수교육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④ 공정한 전문심판원과 심판원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심판원 후진 양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상임심판원은 본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처리 한다.

제25조(상임심판원의 권리) ①협회가 주최·주관하는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의 심판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②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전국대회의 심판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③ 협회가 승인한 시·도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시·도 대회의 심판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④ 협회에서 승인한 시·군·구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시·군·구대회의 심판원을 협회의 승인을 얻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⑤ 상임심판원으로 참여한 경우 소정의 심판원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⑥ 해당연도 상임심판원으로 전국대회 3회 이상 활동한 경우 차기년도 상임심판원으로 우선 선발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 ⑦ 상임심판원으로 2년 이상 활동한 사람에 한하여 국제심판자격검정의 응시자격을 부여 한다.

제 7장 전문심판원

제26조(전문심판원 운영목적) 협회의 공정한 대회운영과 산하회원단체의 공정한 대회운영을 지원하기위하여 전문심판원을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전문심판원의 임면) ① 협회는 2급 이상의 심판원 자격을 보유하고, 전문심판원 자격구분에 응시한 후 소정의 자격검정을 통과하여 당해 연도 전문심판원 연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당해 전문심판원으로 임면한다.

② 제1항의 전문심판원 응시자격구분은 협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8조(전문심판원의 의무) ①협회의 전문심판원으로 임면된 사람은 해당연도의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전국대회에 3회 이상 참여해야한다. 3회 이상 참여를 위반할 경우 차기연도 전문심판원 선발에서 제외 된다.

② 제1항의 3회 중 1회는 본 협회에서 승인한 시·도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의 심판원으로 참여한 경우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전문심판원은 본 협회가 승인하지 않은 각종 대회의 심판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④ 협회에서 공정한 대회운영과 판정을 위하여 주최·주관하는 해당연도 전문심판원 연수교육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⑤ 전문심판원은 전문심판원의 품위와 자질향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⑥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상임심판원은 본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처리 한다.

⑦ 전문심판원은 본 협회 5단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한하여 선발하며, 본 협회 5단 이상의 자격이 없는 경우 전문심판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01.11.)

제29조(전문심판원의 권리) ① 1급 자격을 소지한 전문심판원은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국

제대회 및 전국대회의 심판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② 전문심판원은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전국대회의 심판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③ 협회가 승인한 시·도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시·도대회의 심판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④ 협회에서 승인한 시·군·구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시·군·구대회의 심판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⑤ 전문심판원으로 참여한 경우 소정의 심판원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⑥ 전문심판원으로 전국대회에 3회 이상 참여한 경우 심판원자격승급에서 보수1회를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⑦ 해당연도 전문심판원으로 3회 이상 활동한 경우 차기년도 전문심판원으로 우선 선발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⑧ 1급 자격을 갖고 전문심판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에 한하여 국제심판자격검정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제 8 장 포상 및 징계

제30조 (포상 및 징계) 다음의 사항에 따라 포상 및 징계를 할 수 있다

① 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의 경기에서 우수한 심판원은 협회의 규정에 의거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경기에서 심판 판정의 불공정으로 인한 소청위원회에 제소 된 대회경기 중에서 소청위원회 최종심의결과 심판의 의도적 판정에 의한 승부조작으로 확인 시 해당경기 모든 심판원(배심, 주심, 부심)은 판정일 기준으로 2년 동안 전국대회 심판원으로 활동할 수 없으며, 심판비지급등의 모든 권리도 자동 상실되며, 협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처리 한다.

제 9 장 심판원 자격검정

제31조(심판원 자격검정 목적) 협회 심판원 규정 제8조에 규정한 각 급수별 자격검정시

험에 관해서는 이 시험실시요령에서 정한대로 한다.

제32조(시험의 감독) ① 시험 감독관은 사무처장의 지휘에 따라 경기위원장 및 심판위원장과 각 전문위원장 혹은 상임심판위원 등으로 구성한다.

제33조(지정연수교육) ① 수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별첨1에 기재된 강습회 및 연수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34조(검정시험의 내용) 각 급수별 검정시험 내용은 별첨2와 같이 실시되며 급수별 시험과목과 합격 점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1급 : 학과 30점, 구술 15점, 체력 15점, 실기 40점. 합격 80점 이상
- ② 2급 : 학과 30점, 구술 15점, 체력 15점, 실기 40점. 합격 70점 이상
- ③ 3급 : 학과 30점, 구술 15점, 체력 15점, 실기 40점. 합격 70점 이상

제35조(검정시험의 채점 및 판정) 각 급수별 검정시험은 제4조에 의거 감독관이 채점·평가하고, 협회에서 합·불 판정한다.

- ① 각 급수별 필기시험은 감독관이 채점하고 협회에서 합·불 판정한다.
- ② 2급 및 1급 실기시험은 감독관 1명에 수험자 5명을 한 조로 하여 1코트를 심사하고, 심사항목을 기반으로 채점한다. 채점표는 심판원이 평가하고 협회에서 합·불을 판정한다.
- ③ 시험은 제1항 및 제2항의 판정에 따라 협회가 최종적인 합·불을 종합 판정한다.

제36조(검정시험 실시 후의 절차) 1급, 2급, 3급 자격검정시험 실시 후 합·불 판정, 결과 통지, 등록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험관은 필기, 구술, 체력, 실기시험 별 채점 결과를 정리하여 사무처에 제출한다.
- ② 협회는 시험관이 판정한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인 합·불을 종합 판정한다.
- ③ 협회는 시험 종료 후 1주 이내에 17개 시·도 협회에 합·불 결과를 통지한다.
- ④ 시·도 협회는 합격자 중 등록 의사를 확인한 사람에게 등록절차를 시행한다.

⑤ 시·도 협회는 본 협회에서 합·불 결과통지 후 2개월 이내에 각 급수별 심판원등록신청서를 첨부하여 본 협회에 등록 접수한다.

부 칙 (2016.5.0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3.25.)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12.)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1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1 : 심판원 교재 강습과목과 강습시간 수

기 본 지 식		강 습 시 간 수		
강 습 과 목	소 과 목	1급	2급	3급
I. 스포츠와 심판원	1. 스포츠 룰과 심판원 2. 심판원 역할과 기능	30분	20분	10분
II. 합기도의 역사와 원리	1. 합기도의 역사 2. 합기도의 원리 3. 스포츠와 합기도	30분	20분	20분
III. 사단법인 대한민국의 합기도총협회 조직과 운영	1. 조직과 사업 2. 합기도 보급과 홍보 3. 국내의 체계적인 합기도 발전 방안 연구 4. 국제적인 합기도 조직과 해외 보급	30분	20분	20분
IV. 대회의 개최	1. 대회개최의 유의사항 2. 대회개최계획(안) 결정 3. 대회 프로그램 작성(안) 4. 대회운영과 조직구성(안) 5. 대회운영의 유의사항 6. 대진표작성 및 대회경기운영 (1) 토너먼트전 (2) 리그전	60분	60분	30분
V. 안전대책과 구급처치법	1. 안전대책 2. 구급처치법의 기본적인 사고방식 3. 처치상의 절차와 주의 4. 처치를 하기 전에 5. 의사, 구급차에 통보 6. 현장 유지 7. 향후결과 보고 및 대책마련	30분	30분	20분
VI. 제 규정	1. 대련경기 규정 2. 연무경기 규정 3. 전국합기도대회 개최요강 4. 심판원위원회 규정 5. 심판원 자격시험 실시요령	60분	60분	60분
합 계		4시간	3시간 30분	2시간 40분

별첨 1-2 : 경기규칙 · 기본적인 경기기술의 강습과목과 강습시간 수

경기규칙 · 기본적인 경기기술		강 습 시 간		
강 습 과 목	소 과 목	1급	2급	3급
I.필기강습	1. 합기도 경기규정 (1) 경기장 및 용품 (2) 경기종목 (3) 경기준비방법 (4) 경기기술 (5) 호신술의 이해 (6) 호신술의 응용 2. 경기규정의 이해 (1) 경기종목구분 (2) 체급구분현황 (3) 득점의 유형 (4) 승·패의 결정 (5) 단체연무경기 방법 (6) 호신술 종목 구분 (7) 기록경기방법 (8) 호신행경기의 이해 3. 심판위원회 규정 (1) 배심의 역할 (2) 주심의 역할 (3) 부심의 역할	180분	120분	90분
II.실기강습	1. 경기운영 및 심판수신호 (1) 대련경기 진행방법 (2) 단체연무경기 진행방법 (3) 주심의 심판수신호 2. 호신술 및 합기도경기기술 (1) 호신술 (2) 경기기술(치기, 꺾기, 던지기등)	180분	120분	90분
합 계		6시간	4시간	3시간

별첨 1-3 : 심판실시요령 · 심판기술의 강습과목과 강습시간 수

심판실시요령 · 심판기술		강 습 시 간		
강 습 과 목	소 과 목	1급	2급	3급
I.필기강습	1. 심판원의 자질 및 의무사항 (1) 심판원의 마음가짐 (2) 심판원의 복장 및 휴대품 (3) 심판원의 임무 2. 기본적인 경기진행 (1) 경기준비 · 경기준비 완료 후 대기 (2) 경기개시 · 경기종료 (3) 득점 확인과 승패 결정 (4) 동점시의 경기운영 (5) 경고와 감점에 대한 조치 (6) 안전사고 발생 시 경기운영법 (7) 대련경기 득점의 유형 (8) 합기도 경기종목의 구분 (9) 호신술경기의 종목구분 (10) 호신형경기의 진행 (11) 종합단체연무경기의 세분화 (12) 소청방법과 절차 (13) 심판위원회 규정의 이해 3. 배심, 주심, 부심의 역할론	120	90	90
II.실기강습	1. 대련경기 진행방법 2. 주심의 수신호 3. 단체연무경기 진행방법 4.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처치법 5. 실전대련경기 운영	120	90	90
합 계		4시간	3시간	3시간

별첨1-4 : 각 급별 시험 내용

급수	필 기 시 험	실 기 시 험
1급		
2급		
3급		